

[별지 제76호서식] <개정 2007.6.7>

제 호		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	
이 른 자 동 차 번 호			
소 유 자	성명(명칭)		
	주 소		
적 발 사 실	일 시		
	장 소		
	위 반 내 용		
운 행 정 지 기 간	~		( 일 간)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<input type="checkbox"/>			
○위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 운행정지명령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
○운행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			

33331-31211일

182mm×257mm

96.10.4 승인

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)